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초록

1

회의개요

1. 일시: 2020. 2. 5.(수), 15:50~17:30
2. 장소: 쉐닝튼 여의도 2층 첼시홀(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6)
3. 출석이사: 재적대의원 21명 중 16명 참석
 - 의장 : 유준상
 - 대의원 : 전운기(서울), 하영재(부산), 심경연(광주), 김태식(세종), 남성우(경기), 박상순(강원), 최철희(충북), 채희관(충남), 정일영(전북), 강병석(전남), 구길용(경남), 오용덕(제주), 이현승(오피티), 최홍석(J24), 김수범(카이트), 지매화(장애인연맹)
 - 감사 : 김순교 행정감사
5. 상정안건
 - 가. 전차회의록 초록
 - 1) 201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 나. 보고사항
 - 1) 임원 보선 및 충원 선임 결과
 -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3)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과
 - 다. 심의사항
 - 1) 2019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 2)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 3) 정관 개정
 - 라. 기타사항

2 논의결과(주요내용)

□ 전차회의록 초록

1. 2019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2019.11.28.) : 원안접수

□ 보고사항

1. 임원 보선 및 충원 선임 결과 : 원안접수

가. 보선 임원 현황

번호	직위	성명	소속 및 직위	보선 근거
1	(상근)이사	김창희	前 전국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사무처장	20-1차 이사회(20.1.29.)
2	이사	김정우	사립학교 행정실장/ 이사장	20-1차 이사회(20.1.29.)

나. 임원 현황 : 29명 (회장 1, 부회장 5, 이사 21, 감사 2)

※ 정관 제18조에 따른 임원 정원수 : 31명(회장1, 부회장 및 이사 28, 감사2)

2.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 원안접수

가. 사업계획 요약

- 1) 국제경쟁력 강화 : 우수선수 발굴 및 선발, 대표팀 운영, 국제교류 강화
- 2) 종목 활성화 : 학교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 개최
- 3) 우수조직 및 인재 향상 : 전문 인력 양성, 조직운영 선진화

나. 예산안 요약

관	세입		세출	
	항	금액	관	금액
자체 697,028,916	찬조금	426,816,100	국가대표강화훈련	1,886,291,305
	기금과실금	66,922,986	포상금	100,000,000
	자체수입	158,405,930	후보선수육성	201,4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 2,341,174,836	국가대표강화훈련	1,552,503,800	청소년대표육성	168,609,500
	후보선수육성	197,820,000	국제체육교류	60,462,200
	청소년대표육성	167,709,500	학교체육활성화	15,000,000
	국제체육교류	5,771,200	생활체육활성화	13,000,000
	교육사업	5,005,000	전문인력양성	52,981,600
	국내종합대회지원	27,500,000	전국&국제대회개최	1,163,510,000
	국제전문인력사업	32,887,816	교육사업	11,720,000
	전문인력양성	20,531,600	국제전문인력사업	32,887,816
	경기력향상비	172,000,000	국내회의개최	17,856,000
보조금 788,600,000	회원종목단체지원	159,445,920	인건비	215,432,508
	대회지원금	1,125,600,000	운영비	208,269,734
			미지급금	10,100,922
소계		4,118,919,852	소계	4,157,541,585
전년도이월금		38,621,733	이월금	0
합계		4,157,541,585	합계	4,157,541,585

다. 2020년 제1차 이사회(20.01.29.)에서 심의하였으며, 일부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및 예산을 수정, 보완하기로 수정 의결함.

라. 2020년도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관련 : 2020년 제1차 이사회(20.01.29.)에서 「대회승인 및 운영규정」의 개정 건이 다루어졌으며 규정 개정 후 개정된 규정과 함께 각 시도요트협회 및 전국규모연맹체로 대회 승인 신청 공문을 발송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대회 승인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

마. 참석자 주요발언

1) (경기도대의원) : 대회승인및운영규정 별표4에 월드세일링 주최 세계선수권 및 올림픽 클래스 선수권대회에 해당되는 1급, 2급, 3급 대회에 경우 월드세일링에서 실사로 나오는 비용과 유치대회 심사료가 중복될 소지가 있어 해당 지역 협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서울시대의원) : 승인료 또는 심사료의 일정 비율을 정해 해당되는 금액을 개최하는 대회에 지원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음.

3.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결과 : 원안접수

□ 심의사항

1. 2019년도 정기자체감사 결과

가. 감사기간 : 2020. 1. 23.(목) 1일간

나. 장소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문화센터 1층)

다. 감사인 : 행정감사 김순교, 회계감사 이찬호

라. 감사범위 : 2019년도 사업추진결과 및 결산 등 업무 전반

마. 행정감사인 의견결과

1) 2019년 유준상 회장의 찬조금 후원 내역 확인 결과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249백만원을 찬조 및 후원 해주어 짧은 기간 동안 유준상 회장님께서 많은 찬조와 후원을 해주 시어 협회의 재정적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셨음.

2) 2019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2건의 폭력 사건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는데 앞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혼성 종목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더라도 특히 혼성종목에서의 성폭력 등 선수, 지도자, 임원 간 발생하는 폭력, 성추행 문제는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발

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3) 집행부에서는 유소년 활성화를 위한 소년체전 초등부 신설과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변화에 맞춰 전국체전 여자선수 여자부 신설 등 육성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

바. 회계감사인 의견결과 :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대한요트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음.

사. 결과 : 원안의결

2. 2019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가. 사업결과 요약

- 1) 국제경쟁력 강화 : 대표팀 운영, 국제교류 강화
- 2) 종목 활성화 : 학교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 개최
- 3) 우수조직 및 인재 향상 : 전문 인력 양성, 조직운영 선진화

나. 예산안 요약

세입		세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체수입 440,154,900	찬조금	220,000,000	국가대표강화훈련	1,287,488,200
	후원금	29,800,000	후보선수훈련비	211,842,867
	기금과실금	73,096,332	청소년훈련비	131,398,857
	자체수입	29,456,237	국제체육교류	36,030,632
	연맹체지정기부금	75,744,500	전국&국제대회개최	357,739,890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단, 체육회 지원) 1,840,153,360	국가대표강화훈련	1,100,936,522	국제전문인력사업	35,701,637
	후보선수육성비	209,314,493	전문인력양성	17,084,300
	청소년선수육성비	130,829,141	대회지원금	10,000,000
	국제체육교류	4,562,140	국내회의개최	15,963,040
	국제전문인력사업비	35,701,637	인건비	197,380,329
	체육지도자	15,750,300	운영비	76,684,732
	국내종합대회지원	18,107,590	연맹체지정기부금이관	75,744,500
	경기력향상지원비	169,516,667		
	회원종목단체지원	147,334,670		
	사회첫걸음지원	8,100,200		
보조금 273,709,520	대회지원비	273,709,520		
가산액	19년 미지급금	4,621,307	18미지급금지급	78,896,474
전기이월금	전년도이월금	23,995,935	차기이월금	38,621,733
총계	2,570,577,191	총계	2,570,577,191	

다. 결과 : 원안의결

3. 정관 개정

가.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53조(규정 제·개정 등) 제1항 ‘협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에 의거 2019년 두 차례에 거쳐 개정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함.

나. 전국규모연맹체 및 한국클래스협회,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의 지위 및 역할을 구분해야 할 사항을 반영함.

- 2019년 제6차 이사회 논의(2019.09.20./서울마리나) : 현재 전국규모연맹체로 분류되어 있는 클래스협회는 현실적으로 전국규모연맹체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우며 연맹체 및 클래스협회 등 회원단체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요건에 맞는 단체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 심의(2019.11.18./부산): 국제요트연맹(WS) 정관에 있는 회원 분류를 참고하여 회원을 구분하고 정의하여 회원가 입탈퇴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체육회 정관변경 검토의견(2019.10.01.)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관변경 보완요청(2019.12.16.)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의견(2020.01.02.)에 따라 대한장애인요트연맹은 대한요트협회 전국규모연맹체이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회원단체로 양 단체의 대의원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소속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반영과 국제요트연맹(WS)과의 관계 및 경기규칙을 사용하기 위해 대의원 권한이 없는 제휴단체 회원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다. 개정경과 및 향후 추진 : 2020년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0.1.20.) 원안 승인 → 2020년 제1차 이사회(2020. 1. 29.) 원안 승인 → 대한체육회 검토(2020.2.4.) → 2020년도 정기총회 의결(2020.2.5.) → 문체부 승인

라. 개정 주요내용

1) 제5조(조직) : 월드세일링 정관을 참고하여 전국규모연맹체, 클래스협회, 제휴단체 회원으로 각각 분류하며, 단체 및 개인 회원의 가입, 탈퇴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 제정 근거 명시

2)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회원 분류로 인해 기존 시도회원단체장, 전국규모연맹체장 외 한국클래스협회장 추가

3) 제18조(임원) : 체육회 정관 준용에 따라 부회장 선임 시 전문체육, 생활체육, 지역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씩 포함

4) 제24조(임원의 직무) : 감사의 직무에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

5) 제25조(임원의 임기) 및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 : 임원 연임 횟수

산정 규정을 명확화, 구체화하여 연임제한 취지 강조

- 6)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강화하여 총회에서 선임, 다만 선임권한 회장에게 위임 가능하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후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
- 7)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각종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 명문화
- 8) 제47조의2(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임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조치 근거 및 고발기준 마련

마. 결과 : 원안의결

□ 기타사항

1. 클래스 선수권 개최 관련

- 가. (옵티미스트대의원) 옵티미스트 세계선수권을 개최하고자 할 때 협회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함.
- 나. (의장) 우선적으로 해당 클래스협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계기구, 유치단체에 유치 제안 등 대외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대회 승인료 관련

- 가. (행정감사) 승인료에 필요한 항목에 사용을 해야 하지만 심판 및 경기운영 수당을 대한요트협회에서 지원하여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음.
- 나. (J24대의원) 시도협회 자생력을 위해 중앙협회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함.
- 다. (의장) 시도협회 및 클래스협회에서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려고 함.
- 라. (강원도대의원) 시도협회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하는데 승인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담될 수 있음.
- 마. (사회자) 심사료 및 승인료는 초안을 잡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와 조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함.
- 바. (강원도대의원) 승인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 경기규칙 번역 또는 경기임원 양성 사업은 협회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진행되어야 함.
- 사. (의장) 이 제도를 통해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유연성 있게 운영하며 개선할 것임. 이는 협회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것임.
- 아. (사회자)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임.

3. 전국체전 종목 변경 관련

- 가. (행정감사) 전국체전 종목 변경 시 점수 관련한 문제로 인해 반대하는 시도가 있는데 선수 육성차원에서 각 시도협회에서는 전국체전 종목 변경 관련하여 해당 체육회에 설득하도록 해야 함.

4. 윈드서핑연맹 관련 보고

가. (의장)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엘리트선수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 인구의 활성화와 엘리트체육의 통합으로 함께 하여야 함.

명칭을 한국윈드서핑연맹으로 변경하는 것과 모든 윈드서핑 대회는 협회 주최 윈드연맹 주관으로 하는 것은 서로 확인했고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 받는 생활체육업무 3명의 인건비를 연맹으로 재교부해달라는 윈드연맹의 요구가 있었으나, 이는 다른 연맹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음.

□ 폐회선언 : 17시 30분